「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7월 15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7월 24일

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언 태

나. 제안이유

기존 사용료 면제 조항에 면제 가능한 경우를 신설하고, 휴장과 관련하여 공휴일 외 매주 월요일을 추가함으로써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O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O 휴관 및 운영시간 조문 개정(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」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O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• 안 제8조에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

-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휴장일의 수정으로 원활한 파크 골프장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 다만 조례의 개정 이후, 휴장일에 기존 이용객이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- 구미시민 무료개방 종료 시점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시점이 필요함.
 - 독점적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,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.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